

인지세 납부안내

■ 인지세 안내

-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-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*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·방법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o.or.kr)·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■ 가산세 개정사항 (2021.01.01 부터 적용) * 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
- 납부기한이 지난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④ 구매 - 납부정보 입력

- ① 용도 : 인지세 납부 ②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③ 금액 : 150,000원 ④ 건수 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번호	용도	과세문서 종류	금액	건수	합계금액
1	선택		원	0	원
2	선택		원	0	원
3	선택		원	0	원
4	선택		원	0	원
5	선택		원	0	원
총 금액			원	총 건수	원

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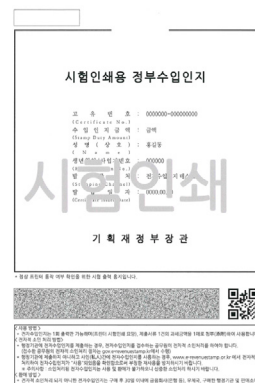
③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로그인
· 회원가입
·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

비회원 서비스

⑤ 출력

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불가)